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623번
- 발 의 자 : 김 경 의원(찬성자 23명)
- 발 의 일 : 2021년 8월 11일
- 회 부 일 :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17년 11월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경찰, 소방, 재난상황실의 협조를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실시간으로 공동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설립 근거가 관련 조례에 담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CCTV 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해왔음.

이에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서울

특별시 CCTV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두고, 기존 조례에 탈락한 자구와 법령을 잘못 인용한 부분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1. 8. 20. ~ 8. 27.)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제해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안 제10조 신설), 탈락한 자구와 잘못 인용한 법령 부분을 함께 개정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목적 규정의 약칭(이하 “법”이라 한다) 사용 삭제
제2조(정의)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법률명 약칭 사용
제3조(적용대상)	- 띄어쓰기 수정(법 제25조 제1항 → 법 제25조제1항) 등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하여 → ~해, 아니 된다 → 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탈락한 자구 보완(영상정보처리기에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제10조(통합관제센터)	- 통합관제센터 규정 신설

※ “CCTV 통합관리”의 정의는 법령상으로는 아직 규정된바 없으나,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2009.9)」 제2조제10호에서 ““CCTV 통합관리”라 함은 기관내 또는 기관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군·구에 설치된 방범, 교통·추가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감시, 시설관리와 학교주변 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조치를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 센터를 말한다고 하고 있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2011년 1월 19일 참조).

- 서울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를 2019년 10월에 구축하여 2020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은 두고 있으나, 이러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설인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설개요

- 장 소 :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트움 15층(관제실,회의실 등), 16층(CCTV 안전체험장)



- 소요예산 : 1,721백만원(전액시비)
- 구축기간 : '19. 5. ~ 10.
- 구성시스템 : 영상표출시스템 등 40종 415대
- 주요기능 : 시 전체 CCTV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공동활용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연혁

- '17.11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협약 체결
(국토부-과기정통부-서울시)
- '18.02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국토부)
- '18.04 : 지능정보화 컨설팅 과제 공모 선정(과기정통부)
- '18.09 :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계획 수립
- '18.12 : 스마트서울 안전망 구축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19.01 : 스마트시티센터-법무부 위치추적센터 연계시스템 구축 협약 체결
(국토부-법무부-서울시-광주시-대전시)
- '19.03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계획 수립
- '19.06 : 스마트서울 안전망(통합플랫폼) 구축 완료(서울시, 마포구)
- '19.09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수배차량검색시스템 연계 협약 체결
(국토부-경찰청-서울시-광주시-강원도-은평구-서초구)
- '19.10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 완료
- '20.01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24시간 관제 시작
- '20.03 : 시 소속기관 CCTV 통합연계 구축(1단계) 완료
(4개 기관 10개소 CCTV 371대)
- '20.06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여성안전지원시스템 연계 협약 체결
(국토부-여가부-서울시-안양시)
- '20.08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군부대 상황실 연계 업무협력 합의 체결
(국토부-국방부-서울시-용인시)
- '20.12 : 시 소속기관 CCTV 통합연계 구축(2단계) 완료
(6개 기관 17개소 CCTV 715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1. 설치 목적 및 장소 | 2. 촬영 범위 및 시간 |
|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관련법률 제 개정안으로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04885호, 제안일자 2020.11.3.),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105683호, 제안일자 2020.11.24.),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110211호, 제안일자 2021.5.18.) 등이 2021년 8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국회 입법과정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7월 “법률 근거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권침해”라고 하면서,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정하도록 권고하였음.

법률 근거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권 침해

- 인공위성영상정보처리기계 수사목적 등을 명목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요구 -

- 1. 국가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요구를 위한 권고서로, 행정안전부(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 없이 원격 장소로 개인정보정보를 전송하거나 저장하거나 보관할 경우 소지자 및 제 3자에게 전할 법률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 2.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설치 운영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국내 설치된 여러 영상기록장치(CCTV)를 대상으로, 영상, 오디오 영상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원격으로 보내, 2020년 말 현재 약 200개 기관의 설치장치를 한 통합관제센터로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약 100만개의 영상, 오디오 기록에 대한 기록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법적 정당한 목적 및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면서, 법적 정당 목적과 목적 외의 일부 활용 있다. 따라서 권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우리 정부는 공공의 기록을 제공하는 목적을 위해서 경찰청, 검찰청, 국외를 운영, 각종 조수단(경찰청, 검찰청),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인정보를 받고, 수집 목적을 넘겨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경우, 법적 근거를 인정한다.
- 4. 그러나 CCTV 촬영 영상을 외부 부실 저장 사용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 및 소지자 정보이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설치된 운영, 관리할 수는 없다. 또한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영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적 법적 근거 없이, 영상, 기록에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찰청이 상주 근무하면서, 영상을 표시해할 때는 사본이 활용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7월 10일 보도자료 참조.

- 다만, 의원 발의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할 소지는 있으나,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는 이미 2020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 도시정책관의 의견 중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의견이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③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세부내용 검토

1)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적용 등(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¹⁾ 법률명 약칭을 삭제하고, 목적 규정 다음에 맨 처음 법률명이 나오는 안 제2조 제5호에서 법률명 약칭이 나오도록 정비하고,
 - 안 제3조(안 제4조, 제9조) 등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2)에 따라 조례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 띄어쓰기, 탈락된 자구 등을 정비하여(안 제3조, 제4조, 제9조 등) 동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p>	<p>제1조(목적) --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 ----- ----- -----.</p> <p>제2조(정의) ----- 뜻은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p>

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9.12., 50면 참조.

2)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2019.12. 참조.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라 함은 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개된 장소” 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7. (생략)

8. “처리” 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생략)
- ②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의 구청장,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알아볼 -----.

5. -----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

6. -----
----- 않는 -----

7. (현행과 같음)

8. -----

----- 비슷한 -----.

제3조(적용대상) ----- 법 제25조제1항 -----

-----.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생략)
- ② -----

-----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영상정보처리기에 -----

-----.

2) 통합관제센터 규정 신설(안 제10조)

- 안 제10조제1항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살펴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은 불특정 다수와 관련되어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의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u>제10조(통합관제센터)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및 실시간 영상 관제</u> 2. <u>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축</u> 3. <u>그 밖에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화된 도시기관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에 관한 사항</u> 2. <u>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및 비상대응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u> 3. <u>CCTV의 임의조작 방지, 영상정보의 유출 방지</u>

- 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4.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
- 5. 영상정보처리기기나 그 밖의 장비의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먼저,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인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설치·운영중인 CCTV를 공동이용체계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안전, 재난, 경찰, 소방 등과 CCTV 영상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와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분산 운영 중인 CCTV까지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1년 스마트서울 CCTV 운영계획

가.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확대

- 연계완료 : 15개 자치구(마포, 서초, 성동, 은평, 구로, 양천, 강남, 동작, 도봉, 서대문, 강서, 동대문, 중랑, 노원, 관악)
- 연계예정 : 10개 자치구(종로, 중구, 용산, 광진, 성북, 강북, 금천, 영등포, 송파, 강동)

나. 市 소규모 CCTV 관제센터를 통합 수용하여 관제효율성 제고

- 문화재관리(역사문화재과), 안심이관제(여성정책담당관), 공공와이파이관제(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다. 관제센터 없이 분산운영 중인 市 소속기관 CCTV 연계 후 통합·관제

- 시민안전 위해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단계적 수용하여 상시 관제

라. CCTV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서울 안전서비스 발굴·도입

- '19년 : 112긴급출동, 112긴급영상, 119긴급출동, 재난상황긴급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서비스 등 6개 서비스 제공

○ '20년 : 수배차량 검색지원, 근무전통제 및 훈련지원, 여성안심서비스 연계

마. CCTV 안전체험실 운영

○ 지능형 CCTV 전시·체험 콘텐츠 소개, 동영상 및 상황실 관람 안내 등

※ 2021년 서울시 부서·산하기관 CCTV 통합관제 현황 : 1,086대

기관명	연계장소	CCTV 대수	연계회선	비고
9개 기관	27개소	1,086	구내망 1, 자가망 4, 임대망 2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30	임대망(KT전용회선)	
	서울숲	34	임대망(KT전용회선)	
	응봉, 천호, 율현 공원	25	임대망(KT전용회선)	공원관리사무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평화의공원	16	자가망(u-CCTV망)	마포구청 중계
	여의도공원	12	임대망(KT전용회선)	
	서서울호수공원	19	임대망(KT전용회선)	
	경의선숲길공원	47	임대망(KT전용회선)	
	문화비축기지	36	임대망(KT전용회선)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공원(중부공원)	62	자가망(u-CCTV망)	종합방제센터 중계
	북서울꿈의숲	38	임대망(KT전용회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실내체육관	77	자가망(u-CCTV망)	송파구청 중계
교통정보과	불법주정차단속사무실	245	구내망(u-CCTV망)	에스플렉스센터 10층
공원녹지정책과	서울로7017	49	임대망(KT전용회선)	서울로종합상황실
서울혁신파크	외부 공원	21	임대망(KT전용회선)	보안상황실
한강사업본부	10개 한강공원	207	임대망(KT전용회선)	공원안내센터
서울식물원	외부 공원	168	자가망(u-CCTV망)	통합관제실 (강서구청 중계)

※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요구자료 1487 제출자료(2021.8.23.) 참조.

- 이를 안 제10조제1항제1호는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³⁾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및 실시간 영상 관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구호”⁴⁾의 범위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⁵⁾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10조제2항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자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⁶⁾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임의조작 등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CCTV 임의조작,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2항제3호)을

- 3)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230호) 참조.
- 4)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구호**”는 법령상 정의는 없으나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하는 것을 말함(「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최종방문 2021년 8월 23일). 다만, “**재난구호**”라 함은 구호물자 관리기관 비상연락, 구호물자 수송, 물자배분, 보관시설, 재난심리 등에 관한 내용을 말함(「재난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제20조제2호다목 참조.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CCTV 관제요원의 사적 정보 수집과 이용을 방지하고, 원본영상과 로그파일의 변조 및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 조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10조제2항제6호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말의 기본적인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으로 되어 있고, 법령문도 주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두도록 하고 있는바, 문구수정에 대하여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0조(통합관제센터) ② (생략) 1. ~ 5. (생략) 6. <u>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u>	제10조(통합관제센터) ② (생략) 1. ~ 5. (생략) 6.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안 제10조의 조문 제목을 “통합관제센터”로 하고 있으나 안 제10조제1항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2항은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의 제목을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 조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하여 제목을 정하고,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정하기 곤란하면 “(… 등)”이라고 표시하여 그 제목이 그 밖의 다른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야 함(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18년 6월, 314면 참조).

○ 최근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는 2021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에서 통합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 연계된 자치구 소관 개인영상정보가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는 주의 처분을 받았는바,⁷⁾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는 2021년 1월 현재 서울시가 직접 수집하는 1,652대의 CCTV 영상 외에 관내 자치구가 수집하는 36,969대의 CCTV 영상이 연계되어 있고, ...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통해 유관기관으로 전달·전송되는 관내 자치구 소관 영상을 안전센터에서도 별다른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관리자 계정에서는 이와 같이 전달·전송되는 영상 외에도 통합플랫폼에 연계된 관내 자치구 소관 CCTV 36,969대의 영상을 모두 열람할 수 있게 설계·구축되어 있고, 실제 2021년 1월 한 달간 26,466건의 자치구 소관 영상을 열람한 기록이 확인되었음.

- 감사원은 서울시가 직접 수집하지도 않은 개인 영상정보를 업무위탁 등도 없이 열람 등 처리하는 경우 안전센터에 모인 대량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가 취약해질 우려와 현재 통합플랫폼 시스템상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통한 서울시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을 통제할 수단이 없는 자치구에 해당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 전가 문제를 지적하였음.

※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대하여,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열람, 제공 등 처리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업무위탁 형태 등으로 해당 영상 처리행위의 목적, 한계,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하였음.

7) 감사원, 「감사보고서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2021. 7., 122-126면 참조.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치구 소관 개인 영상정보가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및 관제요원의 영상정보유출과 오·남용 방지 등,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철저한 보안 관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개인 영상정보 처리 기준(감사원, 감사보고서 참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처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 등에서 통합플랫폼 구축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8.10.1. “시·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에서 도가 관내 시·군이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단순 전달·전송만 해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 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도는 관내 시·군의 영상에 대한 열람, 저장, 제공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함.
-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광역센터를 운영하면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는 열람, 저장, 제공 등을 할 수 있으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연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열람, 저장, 제공 등의 처리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하겠음.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등을 문서화하게 되어 있음.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문 숙
---------	-------	-------	-------